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2. 13 선고 2023나106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2. 13 선고 2023나1064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김국종, 이동주, 조원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산운

담당변호사 문건식

변론종결 2023. 11. 15.

판결선고 2023. 12. 1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매매대금채권 원금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가. 주위적으로, 2021. 5. 29.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2021. 5. 29. 체결된 상계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6. 5. 30.자 매매계약 및 2016. 9. 29.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원금은 1,393,000,000원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8행의 “2018. 10. 11.”을 “2019. 1. 3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5, 16행의 “대법원 2016가합10410호”를 “대법원 2018다27689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20, 21행의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977호”를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424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매매대금채권 원금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상계계약이 2016. 5. 30.자 매매계약 및 2016. 9. 29.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사해행위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채권의 원금은 1,393,000,000원이 존재하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와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채무면제,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상회복을 구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상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2016. 5. 30.자 매매계약 및 2016. 9. 29.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부활하여 주식회사 C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이로써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의 취소와 별도로 위 채권의 존재 또는 원금 액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매매대금채권 원금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8쪽 12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15행의 “다툼이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9쪽 14행의 “그런데”부터 16행의 “전제로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11행의 “따라서”부터 12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종전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확약서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확약서를 배제한다거나 같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12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매매대금채권 원금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류지원, 판사 강동훈